
'14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Q&A

2014. 10월

기 후 환 경 본 부
(친환경교통과)

01.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대수

- ▶ 전기승용차 182대를 민간에 보급, 3개 분야로 구분 보급
 - 1분야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 ⇒ 20대
 - 2분야 - 일반 서울시민 ⇒ 112대
 - 3분야 - 기업, 법인, 단체 ⇒ 50대

02. 전기승용차 차종

- ▶ 4개 제작사, 5개 차종(공고문 참고자료3 참조)

기아차		르노삼성	한국GM	BMW
레이EV	쏘울EV	SM3 ZE	스파크EV	i3
3,500만원	4,250만원	4,338만원	3,990만원	5,750~6,340만원

- ▶ 최종 인증전인 닛산 「리프」, 파워큐브 「피스(라보)」 등은 인증후 보급
- ▶ 차종은 신청후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시길 당부

03. 민간보급 지원 내용

- ▶ 전기승용차 구입 보조금 : 대당 2,000만원(국비 1,500 + 시비 500)
- ▶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: 최대 700만원

04. 세제혜택

- ▶ 개별소비세, 교육세, 취득세, 도시철도 공채 등 최대 600만원 감면 가능
 - 예시) 쏘울EV 591만원 감면(985만원 → 394만원)
- ▶ 공고문 참고자료 4 참고, 개별회사 최종 확인 필요

05. 전기차의 자동차세

- ▶ 연간 자동차세는 영업용 2만원, 비영업용 10만원 정액세임
 -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3호 : 그밖의 승용차
- ▶ 지방교육세 포함 최종납부 세액은 영업용 2.6만원, 비영업용 13만원임
 -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%(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7호)

06. 신청자격

- ▶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일(10.6)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·법인·단체 중
- ▶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함
- ▶ 제외기준
 -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(현장실사에서도 탈락될 수 있음)
 - 이미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, 렌트업체(세어링, 장기대여)는 제외

07. 1분야의 구체적 신청자격

- ▶ 1분야는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 가정으로 별도 확인서류 제출 필요
- ▶ 국가유공자 : 상이등급 1~7급,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~14급,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
 -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, 「고엽제법」 적용대상이어야 함
- ▶ 장애인 : 장애등급 1~3등급
- ▶ 다자녀 가정 : '96. 1.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
08. 보급기준(지원대수)

- ▶ (원칙) : 1 세대, 1 기업·법인·단체 당 1대 보급지원
- ▶ (예외) : 「사회적 기업」, 「중소기업」, 「에너지다소비건물 내 입주 기업·법인·단체」는 2대까지 보급지원
 - 에너지다소비건물 : 연간 에너지소비량 2,000TOE 이상인 건물로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31조의 신고를 완료한 건물
 - (예외)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 확인서류 제출 필요

09. 신청서류 제출방법

- ▶ 먼저 구입을 원하는 전기승용차 차종을 선택한 후, 해당 전기차 제작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(대리점 현황은 공고문 '참고자료 2' 참조)

10. 신청서류

- ▶ 전기승용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, 유의사항 동의서(공고문 4쪽 참조)
- ▶ 완속충전기 설치(예정)신청서, 설치·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

11. 완속충전기 설치·사용승락서(임대차계약서)를 제출하는 경우

- ▶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작성
 -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
- ▶ 공동주택, 다세대·다가구주택 거주자가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예정시에도 작성
 -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, 관리사무소장 허가서도 동일양식 적용
 - 승인자 서명에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날인

12. 공동주택회사 등에 완속충전기가 있는 경우

- ▶ 완속충전기 설치 없이 전기승용차만 구매 가능함
- ▶ 이 경우, 완속충전기 포기각서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
 - 완속충전기 대체계획을 기재하여야 함(공고문 ‘제출서식 5’ 참조)
 - 기존 설치된 완속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충전기 소유주로부터 설치·사용 승락서를 받아야 함(공고문 ‘제출서식 4’ 참조)
- ▶ 아울러, 포기각서 제출 후에는 충전기 설치지원을 받을 수 없음(소급불가)

13.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신청마감일(11.12)까지 못 받은 경우

- ▶ 관리사무소장 허가를 득하여 완속충전기 설치·사용승락서를 제출하면 우선 신청접수 가능
- ▶ 다만, 현장실사 종료일(12.5)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고 입주자대표의 직인을 날인한 완속충전기 설치·사용승락서를 제출해야 함
 - 제출하지 못하면 보급대상자에서 최종 탈락함

14.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

- ▶ 전체 주민의 2/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
 - 전체 주민수는 동의서에 별도 수기표기, 서류접수·현장실사 중 확인
- ▶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락서에는 대표자 1인의 서명을 하고, 동의연서 첨부

연 번	동,호수	세대원	대표자 성명	동의서명
	합계			
1				

15. 지적도면 제출 필요성

- ▶ 지적도면은 충전기 설치부지의 용도, 접근성 등을 파악하기 위함임
- ▶ 충전기 설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제출면제 가능(아파트·건물 주차장 등)

16. 완속충전기 유형

- ▶ 완속충전기는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2가지임
 - 옥내 설치하는 경우 보호용 캐노피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
- ▶ 전기차 제작사와 제휴된 충전기 업체에서 현장실사 후 적정모델 결정·설치
- ▶ 충전기 업체 및 모델은 공고문 ‘참고자료 5’ 참조

17. 완속충전기 설치 부지

- ▶ 전용 주차공간 약 3m × 5m외에 여유공간 필요
 - 스탠드형 완속충전기 및 분전함 등 최대 바닥면적 1m × 0.5m 필요

18. 완속충전기 설치비용 내역

- ▶ 설계비 50만원 + 충전기 250~300만원 + 전기공사 350~400만원
- ▶ 충전기 설치비용은 대부분 700만원 이내이나,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700만원을 초과하기도 함. 이 경우 초과분은 신청자 부담

19. 완속충전기 부지 및 모델 선정기준

- ▶ 전원 수급지점으로부터 거리 및 전기인입 방법(공중·지중)에 따라 전기 공사비용이 달라지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 검토 필요
- ▶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굴착, 포장과 같은 부대공사가 필요없고, 가선거리가 짧아지는 지점, 별도의 한전인입이 없는 전원공급 유형 우선 검토
 - 母子거래(기존 계량기에 연결된 주계량기 설치 방법)이 더 저렴함
- ▶ 침수의 우려가 없고, 주변에 냉각시설이 없는 등 습도가 높지 않은 지점
- ▶ 전기승용차의 진출입 및 주차가 용이하고, 충전기 고장시 점검·수리를 위한 여유공간이 있는 장소
- ▶ 충전기 설치 및 전기승용차 주차공간을 고려하여 설치지점 선택(바닥·벽면)
 - 설치지점에 따라 충전기 유형(스탠드형/벽걸이형)이 달라짐

20. 전기승용차 주행거리 및 유의사항

- ▶ 전기승용차 주행거리는 차종별로 다르며, 표준연비 기준 91~148km임
 - 표준연비는 도심 주행거리와 고속도로 주행거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
- ▶ 서울시내만 주행시는 회생제동 등으로 최대 139~235km까지 주행가능
 - 회생제동 : 승용차 감속시 모터의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재충전
- ▶ 주행거리는 외부온도, 전기부하(난방히터·에어컨)의 사용여부 및 주행 시간에 따라 달라짐
 - 배터리의 화학반응 조건이 양호한 봄~가을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늘고 기온이 낮은 겨울에는 주행가능 거리가 감소
 - 배터리 전기부하 중 전기모터(일반차의 엔진)를 제외하고 난방히터의 전기소모량이 가장 많고 에어컨은 히터의 10~20% 수준임
 - 난방히터 사용량이 많은 혹한기에는 주행거리가 절반까지 감소 가능
- ▶ 주행거리는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증감폭이 커짐
 - 급가속·급제동 안하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을 할 경우 주행거리 증가
- ▶ 급속/완속 충전방식에 따라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거리도 달라짐
 - 완속충전은 100% 충전이 가능하나 급속충전은 90%까지 충전됨

21. 전기승용차 충전 전기요금

- ▶ 전기요금은 가정용(누진제)가 아닌 별도 '전기승용차 충전용'을 적용함
 - 계산법 : 기본요금(수요전력 × 단가) + 전력량요금(사용량 × 단가)
 - 전기요금표는 공고문 '참고자료 6' 참조
- ▶ 매월 500km 주행을 가정할 경우 월 100kWh를 사용(kWh당 5km 주행)
 - 완속충전기 수요전력은 7~7.7kW로 한전에는 8kW로 신청
 - 최소(하계 경부하) $8\text{kW} \times 2,390 + 100\text{kWh} \times 57.6 = 24,880\text{원}$
 - 최대(동계 최대부하) $8\text{kW} \times 2,390 + 100\text{kWh} \times 190.8 = 38,200\text{원}$
 - 전기요금에는 3.7%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추가로 부가됨

22. 전기승용차 보급 예비대상자 선정(공개추첨)

- ▶ 일시·장소 : '14. 11. 21(금) 10:00,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
 - 기존 11.19(수) 19:00에서 변경됨
- ▶ 공개추첨은 시, 전기차 제작사, 충전기 업체, 신청자 참석
 - 분야별로 본대상자 182명, 예비대상자 546명 추첨
- ▶ 인터넷 생방송 : <http://tv.seoul.go.kr>

23. 당첨자(추첨된 예비대상자) 유의사항

- ▶ 당첨되었더라도 충전기 현장조사 및 설계 이후 설치 여부가 최종확정된 후 전기승용차 제작사(판매사)와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
- ▶ 충전기 설치를 위한 설계가 끝나기 전에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및 운행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
- ▶ 현장실사 등을 통해 당초 신청된 충전기 설치장소에 완속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
- ▶ 당첨자의 차종변경과 명의변경은 불가능
- ▶ 당첨자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첨 포기를 할 경우 11. 26(수)까지 포기서 제출(포기각서 서식 공고문 추가)
- ▶ 충전기 설치 후 전기차를 구입하지 않을 시 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서울시에 반환하고 원상복구비 등을 충전기업체에 부담할 수 있음

- ▶ 전기차(충전기)는 구입일(설치일)로부터 2년 이내 타인에게 명의변경, 공동 명의 판매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됨
- ▶ 전기승용차 뒷면 유리창(우측 하단)에는 서울시에서 보급한 전기승용차 라는 스티커가 부착됨
- ▶ 충전기를 설치하는 전용주차공간에는 별도의 표지판과 주차구획이 설치됨
- ▶ 공동주택 등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 입주민 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반상회, 부녀회 등을 통해 이웃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함

24. 급속충전기 설치

- ▶ 서울시내 주요지점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상시 충전가능
 - 설치수량은 46기이며 레이·쏘울EV(DC차데모)는 모두 사용가능
 - 이중 SM3 ZE(AC3상) 급속충전은 34곳에서만 가능
 - 스파크EV·i3(DC콤보) 급속충전은 아직 가능한 곳이 없음

25. 한국지엠 스파크EV와 BMW i3의 급속충전

- ▶ DC콤보 방식에 대한 인 증은 10월말 완료예정이며 금년말까지 DC콤보 까지 가능한 Triple형 급속충전기 10기 이상 확충 예정
 - Triple형 급속충전기는 3가지 급속충전 방식의 충전건이 달려있음
 - 급속충전방식 : DC차데모(레이·쏘울), AC3상(SM3), DC콤보(스파크·i3)

26. 급속충전기 사용을 위한 회원카드 발급

- ▶ 서울시내 급속충전기 사용을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'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발급 신청
 -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www.evcis.or.kr>

27. 급속충전기 위치 및 이용정보 확인방법

- ▶ 인터넷을 이용하여 ‘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홈페이지’ 접속 시 급속충전기 위치, 충전가능 차종, 고장여부 및 사용중 여부 등에 대해 확인 가능
 -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www.evcis.or.kr>

28. 임대차계약 만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완속충전기 이전비용은?

- ▶ 충전기 이전비는 신청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, 이전비용은 설치방식 및 이전거리에 따라 다르므로 충전기 설치업체에 문의

29. 전기승용차 구입후 서울시 밖으로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

- ▶ 임대차계약 만료 등 부득이한 경우 서울시 외로 주거지 이전은 가능함
- ▶ 다만, 구입후 2년 이내 명의변경, 공동명의 판매 등은 불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됨